

〈政策資料 89 - 09〉

個人的私生活保護에 관한 法的 研究

個人的私生活保護에 관한 法的 研究
— 行政電算化 등과 關聯하여 —

個人的私生活保護에 관한 法的 研究
— 行政電算化등과 關聯하여 —

1989. 10.

要約文

第 1 章 머리말

第 2 章 立法의 基本方向

1. 現行法의 問題點
2. 프라이버시保護原則과 立法의 基本方向

第 3 章 法律試案의 要綱

1. 目的과 概要
2. 主要內容

第 4 章 法律試案解說

1. 試案의 條文別·項目別 解說
2. 檢討要望事項

第 5 章 個人情報의 秘密保護에 관한 法律(試案)

參考文獻

1989.10

通信開發研究院
KISDI

通信開發研究院
KISDI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CPj. c. 9

〈政策資料 89 - 09〉

個人的私生活保護에 관한 法的 研究

— 行政電算化등과 關聯하여 —

1989. 10.

通信開發研究院
KISDI

提 出 文

通信開發研究院長 貴下

本 報告書를 “個人的 私生活保護에 관한 法的 研究”의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89. 10

研究責任者：朴 鈞 炳

(慶熙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共同研究者：李 圭 正

(慶熙大學校 法科大學 講師)

朴 永 哲

(慶熙大學校大學院博士課程)

要約文

個人的私生活を保護한다는 側面에서 볼 때 情報化社會는 그다지 樂觀的이지 못하다는 데에 대하여는 異論이 없을 것이다. 現代情報化社會가 多方面에서 人間生活의 質的인 向上에 크게 奇與할 것임은 분명하나 그에 비례하여 多様な 情報體系에 의한 個人情報 또는 個人的인 秘密의 廣範圍한 蒐集·管理와 컴퓨터 등 現代的電算器機에 의한 그 活用の 容易함으로 인하여 個人的 프라이버시가 크게 威脅받을 可能性이 있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情報化社會의 否定的인 要素를 解消하기 위하여 適節한 對應策이 摸索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스웨덴, 미국, 서독, 프랑스 등 상당수의 국가에서 종래 消極的인 權利로 여겨왔던 傳統的인 프라이버시權概念을 積極的인 權利로 재구성하여 個人的 「자기 자신에 관한 情報의 統制權」을 立法으로써 保障해 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떻든, 情報化社會의 進展과 個人的 프라이버시保護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當面한 問題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동안의 사정은 차치하더라도 현재 政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國家基幹電算網事業이 情報化社會의 順機能에 착안하여 電算網의 開發·普及 및 利用의 促進이라는 物量的·技術的 側面에 치중된 반면에 그 事業의 推進으로 인하여 招來될 수 있는 國民의 基本的人權의 侵害 등 그 逆機能에 대한 配慮가 소홀하다는 批判이 나오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早速히 情報化社會에 對應할 수 있는 法的·制度的 補完策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一般的인 指摘이다.

이러한 指摘에 따라, 本 研究는 行政電算化 등에 대응하여 個人的私生活を 保護한다는 趣旨下에 立法論的으로 그 內容을 構成하여 보았다. 本 研究에 있어서의 基本的인 方向은 行政機關 등 情報處理主體에 의한 個人情報處理의 合理的인 規制·調整과 個人에 의한 自己情報의 統制可能性을 모색하는 데에 두었으며, 이러한 基本方向에 입각한 立法的 對應 또는 私生活保護立法의 制定에 있어서의 주된 論點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첫째,立法에 있어서는 우선 그 保護對象인 情報의 性格과 形態 등이 決定되어야 한다. 즉, 自然人 외에 法人에 관한 情報도 그 保護對象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問題, 立法의 目的(個人的 私生活保護)과 프라이버시權의 本質(人間的 權利)上 個人情報만을 그 保護對象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컴퓨터 등 電子的自動處理裝置에 의하여 處理된 個人情報만을 그 保護對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手記式的 傳統的인 書類處理方式에 의한 個人情報까지를 포함하여 保護할 것인가 하는 問題, 그리고 프라이버시侵害危險성이 낮은 個人情報 또는 이미 一般에 알려지거나 一般的으로 接近할 수 있는 情報源으로부터 抽出된 個人情報 등 一定範圍의 個人情報를 그 保護對象에서 除外시키는 問題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本研究는 個人情報만을 對象으로 컴퓨터處理된 情報와 手記式文書를 모두 포함하고, 一般에 公表·公開된 個人情報 등 一定範圍의 個人情報를 保護對象에서 除外하는 方案을 檢討하였다.

둘째, 保護法의 規制를 받는 個人情報處理主體 즉, 情報處理者 또는 情報處理機關을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등 公的部分으로 限定할 것인가 또는 民間部門으로 까지 擴大할 것인가 하는 問題와 各 部門에 있어서도 그 包含範圍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 問題에 대하여 本研究는 公的部門 외에 民間部門도 包含시키되 民間部門은 經濟的信用 등 個人的인 秘密을 크게 侵害할 憂慮가 있는 範圍에 限定시키고 나머지 부문에 대하여는 個人情報의 適正한 處理를 勸告하는 方向으로 하였다.

셋째, 情報處理機關에 의한 個人情報의 處理를 어떠한 方式과 內容으로 規制할 것인가가 問題된다. 우선 個人情報處理의 規制方式으로는 情報處理機關으로 하여금 情報處理를 自律적으로 統制·調節하도록 處理節次規定을 整備함으로써 間接적으로 情報處理의 合理化·適正化를 도모하는 方式과 外部的인 監督機構를 設置하여 強力한 監視·監督權限을 附與함으로써 情報處理에 대하여 直接的이고 他律的인 統制를 가하는 方式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本研究는 前者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되 情報處理機關을 組織體系上 指揮·監督하는 主務官廳과 이 法의 運用 全般을 관장하는 總括機關으로 하여

금 自律적으로 規制·調整할 수 있도록 一般的인 權限을 附與하고, 아울러 諮問委員會를 設置하여 장차 私生活保護制度의 進전에 따라서 漸進的인 發展可能性을 摸索하였다. 그리고 個人情報의 處理를 規制·制限하는 內容에 관하여는 外國立法例와 OECD 勸告案 등이 많은 참고가 될 것인 바, 本研究에서는 個人情報處理의 規制內容으로서 個人情報處理의 申告 및 登錄, 直接的이고 適法한 蒐集, 個人情報蒐集·處理의 目的 및 그 保有期間의 明確化, 個人情報의 安全과 秘密維持를 위한 措置義務, 일정한 個人情報의 컴퓨터에 의한 入力禁止, 個人情報의 登錄된 目的에 適合한 利用 및 提供의 原則, 個人情報의 委託處理에 대한 責任, 個人情報의 國外移轉 및 國外委託處理의 規制 그리고, 個人情報를 處理하는 者 및 그 밖의 關聯者의 秘密遵守義務 등을 분명히 하였다.

넷째, 自己情報의 統制를 통하여 積極的인 意味의 프라이버시權을 實現하기 위하여는 情報當事者에게 어떠한 權利를 認定할 것인가 하는 問題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本研究는 個人的 自己情報에 대한 權利를 충분히 認定하여 關聯情報處理機關에의 質疑權, 閱覽·寫本交付請求權 및 訂正·抹消請求權 등의 諸權利를 認定함과 아울러 이러한 權利의 侵害에 대비하여 義務履行審判請求權, 調整申請權 등의 第2次的인 救濟手段을 마련하였다. 또한 本研究는 이러한 制度들이 形式的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個人的 權利保護를 위하여 實質적으로 機能할 수 있도록 個人情報處理에 관한 事項을 一般에 公開하는 등 諸般 節次를 規定함과 동시에, 이러한 情報當事者의 權利가 他人의 權利, 國家利益 등 보다 重要한 다른 利益과 相衝되는 경우에 權利行使의 例外를 認定하는 問題에 대하여도 檢討하였다.

끝으로, 立法의 實效성을 確保하기 위하여는 違反者에 대한 罰則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도 配慮를 하였다.

그러나 本研究를 進行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電算網構築事業이 아직은 初期段階에 불과하고, 그동안 個人에 관한 情報 또는 秘密을 保護하기 위한 法的制度가 未備하였으며, 또한 이 問題에 대한 學問的인 論議나 社會的인 認識이 그다지 폭넓게 形成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지나치게 理想的인 立法은 오히려 制度 自體의 有名無實化를 招來할 수도 있다는 우리의 現實的인 與件도 감안하였음을 아울러 밝혀 둔다.

目 次

要約文	i
第1章 머리말	1
第2章 立法의 基本方向	5
1. 現行法의 問題點	5
2. 프라이버시保護原則과 立法의 基本方向	6
第3章 法律試案의 要綱	9
1. 目的과 概要	9
2. 主要內容	10
第4章 法律試案解說	15
1. 試案의 條文別·項目別 解說	15
2. 檢討要望事項	59
第5章 個人情報의 秘密保護에 관한 法律(試案)	73
參考文獻	93

表 目 次

〈表 I〉 主要 立法例別 個人情報處理規制·調整關聯機關	63
〈表 II〉 主要 立法例別 通知·申告·登錄事項	64
〈表 III〉 主要 立法例別 公示事項	65
〈表 IV〉 主要 立法例別 規制免除·緩和事由	66

第 1 章 머리말

現代社會를 흔히 情報化社會(Information Oriented Society)라고 부른다. 여기에서의 情報化社會란 일반적으로 공업제품보다는 情報의 加工·處理 및 整理가 더 큰 價値를 창출하는 社會, 情報가 에너지나 서어비스보다 더 유력한 資源이 되고 情報를 중심으로 經濟가 운영되는 社會, 그리고 政治的으로는 情報가 統治에 있어서 不可缺의 手段이 되는 社會라고 할 수 있다.¹⁾ 現代社會의 이러한 양상은 人間生活의 중심이 有形的 財貨의 生産·分配·消費에서 無形의 知識 또는 情報의 蒐集·利用·應用 및 그 享有로 移行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와 같은 情報化社會의 진전은 社會內部의 자유로운 意思 疏通을 더욱 容易하게 해 주는 것 외에도 業務能率을 향상시켜 人間生活에 物質的·精神 的인 恩惠를 더하여 주는 등 수없이 많은 영역에서 肯定的 評價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情報化社會의 이러한 肯定的인 機能의 裏面에는 많은 문제점도 도사리고 있는 바, 情報의 폭넓은 利用 및 活用으로 인한 個人的 私生活侵害可能性도 그 중의 하나이다. 즉, 現代社會의 多樣한 情報體系에 의한 個人情報의 대량적인 蒐集·管理과 電算 處理에 의한 그 活用の 容易함은 個人的 프라이버시(Privacy)保護에 赤信號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여러 國家機關을 비롯하여 企業 및 그 밖의 私的 調査機關 등에 의한 광범위 하고 조직적인 情報의 蒐集·蓄積은 컴퓨터科學技術의 비약적인 발전과 아울러 신속· 광범한 情報傳達體系를 갖춘 각종 매스미디어(mass media)의 발달과 결부됨으로써, 國民의 基本權保障이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現代福祉行政國家에 있어서의 國家機能의 확대요청은 政府機能의 多樣化·專門化와 함께 國家機關에 의한 각종 情報의 蒐集·處理 및 活用の 必要性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情報利用의 擴大는 그 利用·活用の 程度와 方法에 따라 個人的 私生活에 치명적인 被害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그동안 많은 問題提起를 받아 왔다. 더구나 自由民

1) 卞在玉, 『情報化社會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權利』,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78, pp. 166-170 참조.

主義의 필수불가결한 基本要素로서 國民의 「알 권리」가 강조되고, 그에 따라 情報의 公開가 一般化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이고 무방비상태의 個人情報의 流出 내지 公開는 人間의 尊嚴성과 人格의 維持에 필요한 프라이버시權의 存立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대하여는 부언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問題點을 감안할 때, 종래 「홀로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로서 私生活을 함부로 公開당하거나 侵害당하지 아니할 消極的인 權利로 이해되었던 프라이버시權을 보다 積極的인 權利로 再構成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人間의 尊嚴과 幸福追求의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아울러 現代情報管理社會化의 현상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人間의 自律性을 확보하고 個性을 伸張시키기 위하여 傳統的인 프라이버시權概念에 個人의 「자기 자신에 관한 情報의 統制權」이라는 積極的인 概念을 포함시키려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權을 積極的인 意味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外國立法例에 있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스웨덴, 미국, 서독 등 歐美의 상당수 국가에서는 國家機關 등에 의한 情報의 大量蓄積에 따른 否定的인 要素를 해소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保護立法을 制定하였거나 制定段階에 있으며, 아시아지역에서는 유일하게 日本이 1988년 말에 「行政機關이 保有하는 電子計算機處理에 따른 個人情報保護法」을 제정함으로써 그 意志를 可視化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동안 福祉國家實現을 위한 國民의 生存配慮와 「危機政府의 恒常化」라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國家機能의 擴大와 더불어 여러 國家機關에 의한 情報의 組織的인 蓄積이 행하여져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行政業務의 電算化를 통한 行政能率의 提高와 國民生活의 質的 向上 및 社會的 公平性을 확보하기 위한 國家基幹電算網計劃이 수립됨으로써 각종 情報 및 資料의 保管·活用に 많은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 즉, 政府는 1986년에 電算網의 開發普及과 利用 등을 촉진하여 情報化社會의 基盤을 조성함으로써 國民生活의 향상과 公共福利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電算網普及擴張과 利用促進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여 國家基幹電算網構築事業의 근거를 확보하

었다. 1988년에 政府計劃으로 확정된 「國家基幹電算網基本計劃」에 의하면,²⁾ 政府는 작고 효율적인 政府의 具現과 편안한 國民生活에 기여하고 높은 企業生産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公共部門에 있어서는 國家基幹電算網事業을 중심으로 90년대 중반까지 行政電算網, 金融電算網, 教育·研究電算網, 國防電算網 및 公安電算網의 5大 公共機關 電算網을 완성하고 나아가 2000년대 초까지는 5大 電算網을 통합·운영하여 국가전체의 國家電算化事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리고 民間部門에 대하여는 制度 및 政策을 지원하여 企業 및 家計의 自律的 電算化를 促進함으로써 公共部門과 함께 先進水準의 情報産業基盤을 마련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電算網의 構築은 國民便益의 提供과 行政의 能率化·迅速化에 많은 貢獻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한편에서는 政府 등에 의하여 蒐集·保管된 情報 및 資料의 濫用·誤用 내지 惡用에 의한 個人의 私生活侵害의 우려도 상당히 나오고 있다.³⁾

그러므로 國家行政電算化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否定的 要素를 最少化하여야 한다는 前提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렇게 볼 때 行政電算化 등에 의한 個人情報의 광범위한 蒐集·保管과 活用으로부터 個人의 私生活을 保護하는 데에 필요한 制度的裝置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요청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情報의 活用으로부터 個人의 私生活을 法的으로 保護하는 문제는 民事法, 刑事法 등 기존의 現行法을 補完하거나 公務員의 秘密遵守義務 등을 강조함으로써 保護를 피하는 방안과 새로운 立法에 의하여 積極的인 保護를 도모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으나, 現行法의 活用은 現代情報化社會에서의 프라이버시權의 積極的인 概念化 要請에 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指摘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본 研究에서는 새로운 立法에 의한 個人의 프라이버시 保護可能性을 모색한다는 취지에, 우리의 現實與件 등을 감안하고 동시에 外國의 主要 立法例⁴⁾

2) 電算網調整委員會, 『國家基幹電算網基本計劃』, 1989. 1.

3) 電算網普及에 따른 逆機能으로는 個人情報의 侵害 외에도 國家機密의 漏泄, 經濟秩序의 破壞可能性, 犯罪行爲의 發生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金哲洙, 「情報社會와 프라이버시」(통신개발연구원 주최 기념학술대회), 1989. 6. 8, p.28. 卍 世世世世浩浩浩浩

4) 본 研究에서는 外國立法例 중 특히 스웨덴, 미국, 서독, 프랑스, 영국 및 일본의 立法例를 주로 참조하였다. 이들 立法例의 韓國語 翻譯本은 法制處, 『各國의 個人情報保護關係法(법제자료 제150집)』, 1989 참조.

를 참고하여 個人情報의 保護를 위한 法律試案을 제시해 보았다. 여러모로 未盡한 部分이 많으나, 이번의 研究가 우리나라에서의 個人 私生活保護의 方向을 提示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울러 此際에 個人的 프라이버시權에 대한 認識을 새롭게 하고 社會的輿論을 集約시켜 우리의 現實에 알맞는 個人情報保護立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第 2 章 立法의 基本方向

1. 現行法의 問題點

現代情報化社會에 있어서의 個人的 프라이버시權概念에 「自己情報에 대한 統制權」이라는 이른바, 積極的 意味의 프라이버시까지 포함된다고 볼 때, 우리나라의 現行法律中에서 이러한 現代情報化社會의인 프라이버시權을 충분히 保障하고 있는 法律은 찾아볼 수 없다. 즉, 既存의 法律들은 傳統的인 消極的 意味의 프라이버시權의 保護에 치중되어 個人的 私生活이 不當하게 侵入을 받은 경우에 事後的으로 救濟하거나 處罰하도록 하고 있을 뿐, 事前에 個人에 관한 情報 또는 秘密에 대한 侵害를 豫防하거나 그것의 取扱을 規制하는 데에는 그다지 배려를 하고 있지 않다. 이하에서는 비록 消極的이기는 하지만 個人的 프라이버시保護를 위한 現行法上의 制度를 간략히 검토한 후, 現代情報化社會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私生活保護立法의 基本的인 方向 내지 指針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現行法上의 프라이버시保護에 관련된 制度로는 우선, 刑法을 비롯한 여러 關係法律에 있어서의 公務上 또는 業務上秘密漏泄罪와 公務員 등의 守秘義務規定⁵⁾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公務員, 辯護士, 醫師 등 일정한 身分의 要件을 갖춘 자가 職務遂行上 또는 業務遂行上 知得한 秘密을 함부로 漏泄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서, 個人的 프라이버시保護에도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刑法은 信書·文書 등을 開披하여 個人的 秘密을 침해하거나 住居侵入·名譽毀損 및 信用毀損 등으로 인하여 私人이 他人의 社會的 價値 또는 私生活의 平穩을 侵害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人格

5) 예컨대, 國家公務員法(제60조), 地方公務員法(제52조), 刑事訴訟法(제198조), 郵便法(제3조, 제51조 및 제51조의 2), 臨時郵便團束法(제7조), 電算網普及擴張과 利用促進에 관한 法律(제25조), 醫療法(제19조), 母子保健法(제24조), 傳染病豫防法(제56조5호), 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제7조), 辯護士法(제22조), 司法書士法(제14조), 公證人法(제5조), 信用調査業法(제10조3호, 제15조), 金融實名去來에 관한 法律(제5조),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제18조), 統計法(제18조), 建設業法(제56조) 등 守秘義務를 규정한 現行法律은 많다.

의 자유로운 發現을 도모하고 있다.

다음으로 民事法의 次元에서는 프라이버시侵害가 있는 경우에 不法行爲責任에 기한 損害賠償請求를 인정하여 事後的인 救濟가 이루어질 수 있음은 당연하다(民法 제751조).

그리고 現行法律 중에는 특히, 民間部門에 의한 個人信用情報나 私生活의 調査를 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며(신용조사업법 제10조1호 및 10호), 아울러 個人의 經濟的 信用에 관한 情報 내지 事項을 法定目的 또는 業務目的 이외의 목적으로 轉用하거나 使用하는 것을 禁止하는 法律도 있다(신용조사업법 제16조, 신용카드업법 제14조 등).

이러한 法律들 외에도, 定期刊行物登錄法과 放送法 등은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에 公表된 事實的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에게 訂正報道請求權을 인정하고 있다(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 제16조, 방송법 제41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現行法律들은 대체로 個人에 관한 情報내지 秘密의 保護에 있어서 事後的이고 消極的인 態度를 견지하고 있다. 물론 몇몇 單行法律에서 個人情報의 蒐集·利用에 制限을 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制限된 範圍에 적용됨에 그치기 때문에 積極的 意味의 프라이버시保護를 위한 個人情報處理過程의 規制와 自己情報에 대한 個人的인 接近·統制의 保障이라는 現代情報化社會의 要請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프라이버시保護原則과 立法의 基本方向

積極的 概念의 프라이버시權을 실현하기 위한 個人情報保護의 基本原則으로는, OECD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經濟協力開發機構)가 1980년에 그 理事會勸告의 형식으로 채택한 「프라이버시保護와 個人데이터의 國際流通에 관한 指針」에서의 8原則과 그에 의거한 영국의 1984년 「데이터保護法」상의 8原則 및 OECD 8原則등을 참고하여 日本行政監理廳 프라이버시保護委員會가 1981년에

제시한 5개 原則등이 주로 인용되고 있다.⁶⁾ 참고로, OECD 勸告案의 8原則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 1) 蒐集制限의 原則 - 個人데이터의 蒐集은 合法的이고 公正한 節次에 의하고, 가능한 한 데이터主體에게 알리거나 同意를 얻은 후에 하여야 한다.
- 2) 데이터內容의 原則 - 個人데이터는 그 利用目的에 符合되는 것이어야 하며, 利用目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正確하고 完全하며 最新의 것이어야 한다.
- 3) 目的明確化의 原則 - 個人데이터는 늦어도 수집시까지 그 蒐集目的이 明白히 되어야 하며, 그 후의 利用은 蒐集目的의 實現 또는 蒐集目的과 兩立되어야 하고 目的이 變更될 때마다 明確化되어야 한다.
- 4) 利用制限의 原則 - 個人데이터는 目的明確化의 原則에 의하여 明確화된 目的 이외의 다른 目的을 위하여 開示, 利用, 그 밖의 使用에 提供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데이터主體의 同意가 있거나 法律의 規定에 의한 경우에는 例外이다.
- 5) 安全保護의 原則 - 個人데이터는 그 紛失 또는 不法的인 接近·使用·毀損·變造·開示등의 위협에 대하여 合理的인 安全措置를 함으로써 保護하여야 한다.
- 6) 公開의 原則 - 個人데이터의 處理와 관련된 情報處理裝置의 設置·活用과 關聯政策은 一般에 公開하여야 한다. 또한 個人데이터의 存在·性質·主要利用目的 및 데이터管理者를 식별하고, 그 住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手段은 용이하게 利用할 수 있어야 한다.
- 7) 個人參加의 原則 - 個人은 自己에 관한 데이터의 所在를 확인할 權利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自己에 관한 데이터를 合理的인 期間內에 過多하지 않은 費用과 合理的인 方法에 의하여 알기 쉬운 형태로 通知받을 權利를 가진다. 이러한 權利가 拒否된 경우에 個人은 그 이유를 구하고 拒否에 대하여 異議를 提起하거나 데

6) 영국 데이터保護法에서의 데이터保護 8原則에는 蒐集·處理의 適法性原則, 目的明確化의 原則, 目的外 使用禁止의 原則, 蒐集·保有制限의 原則, 正確性維持의 原則, 無期限保有禁止의 原則, 個人參加의 原則, 安全保護措置의 原則이 있으며, 蒐集制限의 原則, 利用制限의 原則, 個人參加의 原則, 適正管理의 原則, 그리고 責任明確化의 原則은 日本 行政監理廳 프라이버시 保護委員會가 제시한 5개 原則이다.

이터의 廢棄·訂正·補完을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8) 責任의 原則 - 데이터管理者는 위의 諸原則을 실시하기 위한 措置에 따를 責任이 있다.

이와같은 基本原則은 우리나라에서의 프라이버시保護法 制定에 있어서도 중요한 指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프라이버시保護法制定은 이러한 基本原則을 바탕으로 하여 個人의 프라이버시保護와 國家目的·行政能率과의 調和, 프라이버시權과 알 權利(情報請求權)·表現의 自由·經濟的 自由 및 기타 國民의 基本的人權과의 調和, 그리고 앞으로 立法化의 論議가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犯罪防止立法·情報公開立法과 그 밖에 기존의 다른 法律들과의 關係調整 등을 모색하는 方向으로 推進될 것이 요청된다.

第 3 章 法律試案의 要綱

1. 目的과 概要

이 法은 行政機關 등에 의한 個人情報處理를 적절히 規制·調整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國民의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헌법 제17조)를 保障함과 아울러 情報通信行政業務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운영과 情報通信產業의 發展을 도모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法案이 규정하고 있는 特種적 內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이 法案은 個人情報의 處理에 관하여 外國의 立法例(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外部的이고 他律的인 統制方式을 취하기보다는 個人情報를 處理하는 情報處理機關 및 그 機關을 組織體系上 指揮·監督하는 主務官廳이 自律的으로 規制·調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情報通信業務를 관장하는 遞信部長官이 이를 總括하도록 하고, 나아가 遞信部長官이 個人情報處理狀況 등을 大統領과 國會에 정기적으로 報告하게 하였다.

둘째, 이 法案은 行政機關 등에 의한 個人情報의 處理로부터 個人의 權利와 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이른바 「프라이버시保護를 위한 8原則」에 입각하여 個人情報의 利用 및 提供을 制限하는 등 個人情報의 處理에 대하여 일정한 規制를 가하였으며, 특히 「個人參加의 原則」 또는 「自己情報의 統制權保障」이라는 積極的인 프라이버시權概念의 現代的 要請에 부응하기 위하여 情報當事者에게 자신에 관한 個人情報의 閱覽과 訂正 등의 諸權利를 인정하고 동시에 그러한 權利의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한 制度를 두었다.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구상하에서 本 研究는 法律의 試案을 作成하는 한편, 立法過程에서 특히 論難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民間部門의 適用對象에의 포함문제와 컴퓨터 등 電子의 自動處理裝置에 의하여 處理된 個人情報 뿐만 아니라 手記에 의하여 處理된 個人情報까지 그 保護對象에 포함하는 문제를 감안하여 民間部門과 手記式文書를 그 대상에서 제외시킨 第2案을 附記하였다.

2. 主要內容

(1) 適用對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情報處理者(機關)에는 國家의 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 및 韓國銀行 등의 公的部門 외에 民間部門도 포함시키되, 다만 民間部門은 經濟的 信用 등 個人的 秘密을 크게 侵害할 우려가 있는 金融·保險·信託 등의 業務를 취급하는 者와 情報處理 또는 情報서비스提供을 營業으로 하는 者 중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도록 하였다(案제3조). 그러나 民間部門(民間情報處理機關)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第2案에서는 民間部門을 제외시켰다. 아울러 試案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個人이나 團體가 個人정보를 處理하는 경우에도 個人정보保護를 위한 이 법의 規定에 준하는 適切한 措置를 講究하도록 하는 勸告的 規定을 두었다(案제26조).

(2) 個人정보의 意義와 形態

이 법의 保護對象이 되는 個人정보에는 姓名·生年月日·個人別番號 등 일정한 記述 또는 符號에 의하여 그 個人的 身元을 識別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情報만으로는 識別이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情報과 쉽게 결합함으로써 그 個人的 身元을 識別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個人정보의 處理形態에 있어서는 컴퓨터에 의하여 處理된 것 외에 手作業정보도 그 保護對象에 넣었다(案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다만 手作業정보의 포함여부에 대하여도 見解가 나뉠 수 있는 만큼 第2案에서는 手作業文書를 除外시켰다.

(3) 個人정보處理의 申告 및 登錄

情報處理機關이 個人정보를 處理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國家安全保障·外交上秘密 등에 관련된 個人정보를 제외하고는 그 處理目的·保有期間·蒐集方法 등 당해 個人정보의 處理에 관련되는 사항을 事前에 主務官廳의 長을 경유하여 總括機關인 遞信部長官에게 登錄하게 하고, 登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個人정보를 處理할 수 없도록 하였다(案

제6조 제1항, 제7조, 제8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10조 제1항).

(4) 個人정보處理의 公示

個人정보處理業務를 總括하는 遞信部長官으로 하여금 個人정보處理狀況을 個人情報閱覽簿 또는 官報를 통하여 定期的·不定期的으로 公開하도록 하여 情報當事者의 權利行使를 용이하게 하였다(案제9조).

(5) 個人정보蒐集의 制限

個人정보는 원칙적으로 法律의 規定이나 情報當事者의 同意에 의하여야만 蒐集·處理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情報當事者 本人으로부터 직접 蒐集하도록 하였다(案제10조 제2항). 그러나 이러한 原則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에는 情報處理 또는 業務의 正常的遂行에 상당한 支障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本人의 同意를 얻기가 어려운 合理的인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例外를 認定하였다(案제6조 제1항 제7호).

(6) 目的特定화와 保有期間의 制限

個人정보處理의 目的은 당해 機關의 所管業務遂行目的에 적합하고 관련되는 것으로서 特定되어야 하며, 그 目的의 達成에 必要한 期間 이상 保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案제10조 제3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

(7) 個人정보內容의 正確性·現在性의 維持

個人정보는 그 處理目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現在의 正確한 事實의 內容을 포함하도록 할 것을 義務化하였다(案제10조 제4항 후문).

(8) 利用 및 提供의 規制

情報處理機關이 個人정보를 보유·이용함에 있어서는 그 範圍 및 內容이 登錄簿에 등록된 것에 일치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였다(案제10조 제4항전문). 그러나 당해 機關이 業務遂行上 日常的으로 利用하는 것은 가능하며 法律의 規定 또는 情報當事者의 同意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制限下에서 등록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利用하거나 國內·國外的

他人에게 提供 또는 移轉할 수 있도록 하였다(案제12조).

(9) 安全措置의 講究

個人情報의 不法的인 流出·毀損 등을 防止하기 위하여 適切하고 合理的인 措置를 강구할 의무를 情報處理機關에게 부과하였다(案제10조 제5항).

(10) 入力の 制限

個人의 政治的·哲學的信念과 勞動組合加入與否 및 그 活動事項은 本人의 明白한 同意가 없는 한 컴퓨터에 의하여 入力할 수 없도록 하고(案제11조), 이를 違反한 경우에는 處罰하도록 하였다(案제29조 제2호).

(11) 個人情報의 國外 移轉 및 委託處理 등의 規制

個人情報의 國外에의 移轉은 公的部門·民間情報處理機關 모두 事前承認을 얻어야 하며, 國外委託處理 등의 경우에는 公的部門은 事前承認을 얻어야 하고 民間情報處理機關은 事前에 申告하도록 함으로써 個人情報의 不法的인 國外流出을 統制할 수 있게 하였다. 主務官廳의 長은 個人情報의 國外移轉 또는 國外委託處理 등에 관하여 承認을 取消할 수 있으며, 遞信部長官은 正當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 承認의 取消등을 主務官廳의 長에게 勸告할 수 있도록 하였다(案제14조 및 제8조 제2항).

(12) 委託處理의 規制

情報處理機關으로부터 個人情報의 處理를 委託받은 者는 當해 機關의 職員으로 보아 情報處理機關이 受託者의 行爲에 대하여 責任을 지도록 하였다(案제13조).

(13) 權利保護를 위한 誠實義務 등

情報處理機關은 情報當事者의 請求에 성실히 응하여 請求日로부터 30일 이내에 請求에 대한 決定을 申請人에게 通知하도록 하였다(案제15조 제1항 및 제21조 제3항). 또한 情報處理機關의 長에 대하여는 當해 기관에서의 個人情報處理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指導·監督할 義務를 부과하였다(案제15조 제2항).

(14) 主務官廳의 長의 權限과 任務

主務官廳의 長은 管轄하에 있는 情報處理機關을 指導·監督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是正 또는 中止命令을 發하거나 資料提出을 命할 수 있게 하고(案제16조), 그 活動事項 등을 定期的으로 遞信部長官에게 通報하도록 하였다(案제18조 제1항).

(15) 遞信部長官의 權限과 任務

遞信部長官은 總括機關으로서 個人情報處理基準의 設定, 登錄業務, 個人情報處理狀況의 公示, 관련 制度의 發展을 위한 연구와 法運營狀況의 大統領 및 國會에의 報告 등의 사무를 管掌하게 하고, 業務遂行上 필요한 경우에는 情報處理機關에 대하여 資料의 提出 및 說明을 요구할 수 있는 權限을 부여하였다(案제17조 및 제18조 제2항).

(16) 民間情報處理機關의 異議申請

主務官廳의 長이 발한 命令 및 기타의 處分 등이 違法·不當한 경우에 民間情報處理機關은 行政審判을 提起할 수 있도록 하였다(案제19조).

(17) 情報當事者의 權利 및 制限

情報當事者에게는 質疑權, 閱覽 및 寫本交付請求權과 訂正·抹消·處理中止 및 廢棄請求權 등의 諸權利를 인정하였다(案제20조 제1항). 그러나 이러한 情報當事者의 權利는 當해 個人情報의 公開로 인하여 犯罪豫防事務, 出入國管理事務 및 租稅의 賦課·徵收事務 등의 수행이 현저하게 阻害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案제6조 제3항), 또한 權利의 認定으로 인하여 제3자의 優越的 利益이 侵害되는 경우 등에도 例外를 인정하였다(案제20조 제2항).

(18) 義務履行審判 및 調停申請

權利行使에 대한 情報處理機關의 履行拒否 또는 不完全履行에 不服하는 情報當事者에게는 情報處理機關이 行政機關 등 公的部門인 경우에는 行政審判法의 규정에 따른 義務履行審判請求를 허용하였으며(案제22조), 民間情報處理機關인 경우에는 主務官廳의 長에 대한 調停申請을 인정하고 그 調停決定에 不服하는 경우에는 行政審判을 提起할 수

있도록 하였다(案제23조).

(19) 諮問委員會의 設置

個人情報處理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고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소속 하에 個人情報處理諮問委員會를 설치하고 그 委員은 國務總理가 任命 또는 委囑하도록 하였다(案제4조).

第 4 章 法律試案解説

1. 試案의 條文別·項目別 解説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등에 의한 개인에 관한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정보통신행정업무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운영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條文解説 및 關聯問題

[解 說] 國家行政機關을 비롯한 公共部門과 일정범위의 民間部門에 의한 個人情報의 處理를 합리적으로 규제·조정함으로써 憲法上 보장된 個人의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情報通信行政業務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운영과 情報通信産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 이 法의 目的이다.

[立法例] 대부분의 立法例는 個人의 프라이버시保護만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나, 일본법은 行政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個人의 權利·利益의 保護를 目的으로 하고 있다(제1조). 그리고 서독법은 情報當事者의 保護價値 있는 利益의 침해를 방지한다고 하여 그 保護法益을 限定하고 있다(제1조1항).

제2조[용어의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문서의 내용을 이루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생년월일 그 밖의 기술, 또는 개인별로 붙인 번호·기호 그 밖의 부호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그

정보만으로는 식별할 수 없으나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함으로써 그것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條文解説 및 關聯問題

[解 說] 이 법의 保護對象인 「個人情報」란 生存하는 個人(自然人)에 관한 情報로서 당해 情報에 포함되어 있는 姓名·生年月日·個人別番號 등의 記述 또는 符號에 의하여 직접·간접으로 당해 個人의 身元을 識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個人정보는 第2號의 定義에 의한 文書의 形態를 갖춘 有體物에 記錄 또는 入力된 것만을 말하고 형태를 이루지 않고 口述 등에 의하여 傳達·利用되는 情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立法例] 自然人的 情報當事者適格만을 인정하는 나라의 모든 立法例는 個人정보의 定義에 있어서 용어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취지에서는 차이가 없다.

- 1) 미 국 : 個人에 관한 개개의 情報로서 教育정도, 재산거래, 病歷, 前科, 취업경력 외에 姓名, 신분번호·기호, 指紋, 聲紋, 사진 등 個人에게 주어진 身分의 識別을 위한 特記事項을 포함(제552조의 2 제1항4호).
- 2) 서 독 : 特定된 또는 特定할 수 있는 自然人的 人的·物的關係에 관한 개별 명세(제2조1항).
- 3) 프랑스 : 형식에 관계없이 직접·간접으로 自然人的 身元을 확인할 수 있는 情報(제4조).
- 4) 영 국 : 당해 個人에 관한 의견의 표현을 포함한 당해 情報로부터 同一性을 인식할 수 있고 또 生存者에 관한 情報를 구성하는 데이터(제1조3항).
- 5) 일 본 : 試案과 大同小異함(제2조2호 본문).

[關聯問題] 個人정보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로서 일정범위의 個人정보를 그 保護對象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법은 法人 기타의 團體에 관하여 記錄된 情報에 포함된 당해 法人 기타 團體의 任員에 관한 情報를 個人정보에서 제외시키고(제2조2호 단서), 統計法 제2조에 규정된 指定統

計의 작성을 위해 蒐集된 個人정보 및 同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해 總務廳長官에게 제출된 통계조사에 의하여 蒐集된 個人정보와 統計報告調整法에 의하여 總務廳長官의 승인을 얻은 統計報告의 徵集에 의하여 얻은 個人정보에 대하여 法適用을 제외시키고 있다(제3조). 本 研究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서 다른 法律에 個人정보處理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案제5조 및 제20조 제2항 제3호).

이 외에도 姓名, 生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과 같이 이미 一般에 公開되었거나 일반적으로 接近할 수 있는 情報源에서 추출된 個人정보와 개인적인 學術研究·娛樂 등 오직 개인적인 용도로써 利用되고 第3者에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個人정보를 保護對象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試案은 이미 일반에 公開되었거나 公表된 個人정보에 대해서는 情報當事者의 閱覽請求 등을 制限할 수 있도록 하였다(案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0조 제2항 제5호). 그리고 第3者에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情報에 대한 規制緩和問題는 試案 第7條에 의하여 반영되고 있다.

2. “문서”라 함은 수기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및 문서철(타자기 등 수동식의 장치 또는 기구를 써서 작성한 문서 및 문서철을 포함한다. 이하 “수기식 문서”라 한다) 과 전자계산기 및 그 밖의 전자적 자동처리장치를 써서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및 이에 준하는 물체 및 그 집합체(이하 “전자적자동처리 문서”라 한다)를 말한다.

條文解説 및 關聯問題

[解 說] 이 법에 의하여 保護되는 個人정보는 그것이 컴퓨터를 비롯한 電子的인 自動處理裝置를 사용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磁氣테이프, 磁氣디스크 등의 物體(또는 그 集合體)에 포함된 것 외에도 사람의 손에 의하여 또는 手動式의 機具나 裝置등을 사용하여 작성된 書類 또는 書類綴에 포함된 것 모두를 말한다. 本 試案에서 手記式文書까지 規制對象에 포함시킨 주된 理由는 그것을 제외

하는 경우에 중요한 情報 또는 公開되기를 꺼리는 個人情報를 手作業으로 處理하는 등 脫法手段으로 惡用할 가능성이 크며, 또한 行政電算化가 더욱 進전되어 대부분의 情報를 컴퓨터로 處理하는 경우에 手作業에 의한 情報處理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나 그러한 少數의 手作業情報가 個人的 私生活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고 오히려 그러한 手作業情報가 無斷으로 外部에 露出되는 경우에는 個人的 프라이버시에 決定的인 危險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手作業情報를 規制對象에 포함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過多한 費用支出과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第2案은 手作業處理에 의한 個人情報를 除外시키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論 議] 현대의 프라이버시保護立法이 논의된 것은 주로 컴퓨터기술을 통한 個人情報의 電算處理가 일반화·보편화되기 시작한 이후의 일인 만큼, 情報處理의 形態에 있어서 電算處理에 의한 個人情報 외에 既存의 傳統的인 書類處理方式에 의한 手作業情報를 프라이버시保護法上的 個人情報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手作業에 의한 個人情報의 處理는 電算化問題가 제기되기 이전부터 행하여져 왔으며, 비록 消極的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個人的 프라이버시保護도 民·刑事法上的 一般原理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프라이버시權의 積極的 概念으로의 認識變化에 따라서 傳統的 書類處理體系에 의한 手作業情報도 새로운 형태의 法的 構造에 의해 規律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그 반대입장이 대립한다.

〈否定論〉 1) 手作業에 의한 情報의 處理는 신속·다량의 情報處理와 檢索·操作의 容易함 등을 특성으로 하는 컴퓨터에 의한 情報處理보다 個人的 프라이버시 侵害可能性이 적고, 또한 그에 대한 保護는 既存法制를 보완·활용함으로써 가능하며, 2) 積極的 概念의 프라이버시保護가 논의되는 주된 이유는 컴퓨터에 의한 電算處理의 일반화·보편화 때문인 만큼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은 당연하며,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法規制의 有名無實化를 초래하기 쉽고, 3) 手作業情報에 있어서는 컴퓨터處理情報과 달리 처리속도나 관리상 難點이 많아서 情報當

事者의 接近을 인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하며, 書類에 대한 接近權을 인정하기에는 과도한 費用이 소요된다.

〈肯定論〉 이에 대하여 手作業情報를 포함시키려는 입장에서는, 1) 手作業處理에 의해서도 個人的 프라이버시가 重大한 侵害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2) 情報處理의 電算化로 인하여 積極的 意味의 프라이버시概念이 주로 논의된 것은 사실이나, 「自己情報에 대한 統制權」으로 프라이버시權의 概念이 변화된 상황에서 電算處理에 의한 情報만으로 그 영역을 제한할 이유가 없으며, 手作業情報에 대한 保護는 종전 法制의 補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自己情報에 대한 個人的 統制·接近權이 충분히 보장될지는 의문이고, 3) 手作業情報의 適用除外는 重要 情報를 手作業으로 處理하는 등 脫法手段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며, 4) 費用·節次 등의 難點이 있으나, 그것이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實現이라는 프라이버시權의 理念에 우선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문제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反論이 가능하다.

[立法例] 이 문제에 대하여 각국의 立法例 중, 1) 스웨덴(제1조), 일본(제2조 3호) 및 영국의 데이터保護法(제1조2항)⁷⁾ 등은 컴퓨터에 의한 情報處理만을 그 對象으로 하고 있고, 2) 미국은 明文規定을 두지 않음으로써 手作業情報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3) 서독의 경우에는 파일(Dateien)이라는 概念을 사용하여 원칙적으로 手作業情報를 포함시키면서도 自動處理를 통하여 再配置되었다고 평가될 수 없는 書類와 書類綴을 그 對象에서 除外시키고, 나아가 파일의 內容을 이루는 개인데이터 중에서 第3者에게 提供될 수 없고 自動節次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개인데이터에 대하여는 情報處理者 및 受託處理者의 技術的·組織上的 義務條項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2조3항3호 및 제1조2항 단서). 그리고 4) 프랑스는 手作業情報를 否認하면서도 保護法上的 一定條項은 非自動파일에 대해서도

7) 1984년 데이터保護法은 컴퓨터處理情報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1987년의 個人記錄 액세스法은 그러한 制限을 두지 않음으로써 그 範圍를 擴大하였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折衷하고 있다(제45조1항 및 4항)⁸⁾

[關聯問題]立法例 중에는 개개의 情報·記錄 외에 記錄시스템(미국)또는 情報파일(서독, 일본)이라는 概念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

- 1) 미 국 : 記錄시스템(system of records)이란 行政機關이 관리하는 기록의 집합으로 情報가 個人의 姓名, 識別番號, 記號 기타 個人에게 配定된 身分의 識別을 위한 特記事項에 의하여 檢索되는 것(제552조의2 제1항 5호).
- 2) 일 본 : 個人情報파일이란 일정한 事務目的의 달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구성된 個人情報의 集合物으로써, 電子計算機處理를 행하기 위한 磁氣테이프, 磁氣디스크,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해 一定한 事項을 確實히 記錄해 둘 수 있는 物體에 記錄된 것(제2조4호).
- 3) 서 독 : 파일(Datei)이란 데이터處理 당시에 적용된 절차(自動·手動)와 관계없이 特定の 記號에 의하여 記入되고 配置된 동일한 종류로 造成된 데이터集(제2조 3항3호).

3. “정보처리”라 함은 정보의 수집·기록·이용·제공·이전·변환·보유·보존·폐기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條文解說 및 關聯問題

[解 說] 이 법에 있어서 情報處理라 함은 情報의 취급과 관련되는 일체의 행위로서 정보취급을 전반적으로 指稱하기 위한 用語이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本號에서 例示적으로 열거한 개개의 情報處理行爲를 구체적으로 摘示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4. “정보당사자”라 함은 개인정보의 주체인 개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정보당사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8) 여기에서의 一定條項이란 不法蒐集禁止條項, 情報安全對策樹立 및 秘密保護條項, 公益法人에 의한 犯法行爲·有罪判決·保安處分關聯 個人情報의 處理許容條項, 그리고 政治的 信條 등에 관한 個人情報의 入力禁止條項 등이다.

條文解說 및 關聯問題

[解 說] 이 법에서의 情報當事者란 個人情報의 主體인 個人을 의미하기 때문에 法人 등 自然人 이외의 자는 情報當事者가 될 수 없으며, 또한 生存하지 않는 自然人도 情報當事者가 될 수 없다(제1호). 다만, 外國人の 경우에는 국제적·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政府가 情報當事者로서의 權利의 認定與否를 決定할 수 있다. 따라서 法人 등 自然人이외의 者와 法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지 않은 外國人에게는 第20條 등의 規定에 의한 情報當事者의 權利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第29條 第5號의 犯罪行爲를 한 경우에 處罰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덧붙여, 이 법에 의한 外國人에는 無國籍者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論 議] 保護法의 制定에 있어서 情報의 內容을 이루는 主體의 範圍를 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는 情報主體의 범위에 自然人 외에 法人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프라이버시權의 本質上 法人 또는 權利能力없는 社團 등의 團體의 프라이버시主體性 認定與否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 문제의 해결에 따라 保護法에 適用될 情報의 性格이 決定되며, 또한 立法의 目的이 個人의 프라이버시保護인지(프라이버시保護法) 또는 個人情報를 비롯한 諸般 情報 및 秘密의 保護인지(情報·秘密保護法)를 구분지을 수 있다.

〈否定論〉法人의 情報當事者適格을 否認하는 견해의 주된 논거는, 1) 프라이버시權은 人間의 尊嚴性을 前提로 한 것이므로 法人은 원칙적으로 이 權利의 主體가 될 수 없으며, 2) 法人은 情報保護立法의 保護對象임과 동시에 個人의 私生活를 侵害하는 主體가 될 수 있다는 法人의 二重의 性格때문에 法適用上 混亂을 招來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法人의 秘密 또는 情報는 프라이버시保護立法보다는 經濟的 自由의 측면에서 會社法, 不正競爭防止法 등의 企業關係立法에 의하여 保護함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肯定論〉一部國家의 立法例는 法論理上 人(person)에는 일반적으로 自然人 외에 法人도 포함되며, 현실적으로도 個人은 물론 個人의 集合體도 保護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法人도 그 保護對象으로 하고 있다(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등).

[立法例] 미국(제552조의2 제1항2호), 스웨덴(제1조), 서독(제2조1항), 프랑스(제4조), 영국(제1조4항) 및 일본(제2조2호) 등 外國立法例의 이 문제에 대한 지배적인 입장은 法人의 情報當事者適格을 否認하고 있다.

[關聯問題] 프라이버시權을 그 本質上 國民 뿐만 아니라 外國人 및 無國籍者를 포함한 「人間」의 權利라고 본다면, 國家的·國際去來的 또는 기타의 目的을 위해 國內·外에 居住하는 外國人에 관련된 情報가 蒐集·處理되는 경우에 그 關聯外國人을 프라이버시保護法의 情報當事者로서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 점에 대하여 미국의 프라이버시法은 「適法하게 永住를 許可받은 外國人」에 대하여 그 情報當事者適格을 인정하고 있다(제552조의2 제1항2호).

(2) 이 법에서의 주무관청의 장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주무관청의 장이 중복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이 조정한다.

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
2. 제1호 이외의 기관인 경우에는 주무중앙행정기관의 장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 다만,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소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條文解說 및 關聯問題

[解 說] 主務官廳의 長은 제16조(지도·감독 등), 제22조(의무이행심판), 제23조(조정), 제8조(신고사항의 송부 등), 제14조(국외이전 등의 승인·승인취소), 제18조(통보임무)와 제19조(행정심판)의 규정에 정하여진 業務를 행하는 者로서, 情報處理機關이 1) 大統領·國務總理下에 소속된 機關(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감사원, 국가안전기획부,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조정실, 정무장관실, 경제기획원, 총무처, 과학기술처, 국토통일원,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인 경우에는 당해 機關의 長이 되며, 2) 第1號 이외의 情報處理機關인 경우에는 主務中央行政機關의 長(행정각부의 장관 및 청장)이 된다. 그러나 3) 個人情報의 處理가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당해 自治團體의 長이 主務官廳의

長이 되며, 다만 市·郡·自治區 이하의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便宜上 소관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道知事が 主務官廳의 長이 된다. 그리고 이 項의 規定에 의하여 主務官廳의 長이 중복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總括機關인 遞信部長官이 調整한다.

[參考事項] 情報處理者에 의한 個人情報의 處理를 規制하는 수단에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데, 監督機關을 설치하여 個人情報處理를 規制·監督하거나 調整하게 하는 方法도 그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監督機關의 문제는 그 機關의 설치여부 및 性格如何와 관련하여 立法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서 신중한 결정을 요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監督機關 설치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外國立法例의 태도는 대체로 1) 별도의 監督機關을 설치하지 않고 情報處理主體로 하여금 個人情報의 處理를 自律적으로 統制·調節하도록 個人情報處理節次規定을 정비함으로써 間接적으로 個人情報處理의 합리화·적정화를 도모하는 방식(미국, 일본), 2) 中립적이고 독립적인 監督機關을 설치하여 強力한 監視·監督權限을 부여함으로써 情報處理主體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타율적인 統制를 가하는 방식(스웨덴, 프랑스, 영국), 그리고 3) 앞의 두가지를 折衷하는 방식(서독)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監督機關을 설치하는 경우에 어떠한 機能과 權限을 부여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立法例上의 監督機關의 機能 및 權限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분류해 보면, 1) 個人情報處理(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파일의 설치)에 대한 申告·登錄의 接受 및 審査와 許可 등의 統制機能(스웨덴, 서독, 프랑스, 영국), 2) 情報시스템 설치, 蒐集·利用·保管 및 適正管理 등 法遵守狀態를 조사·지도·감독하고 위반에 대하여 是正을 勸告·命令하는 機能(스웨덴, 서독, 프랑스, 영국), 3) 是正命令·勸告의 不履行, 기타 法違反에 대하여 司直機關에 고발하는 權限(프랑스), 4) 情報當事者의 民願·苦衷과 情報處理者의 異議申請등을 접수하고 審査·處理하는 機能(서독, 프랑스, 영국), 5) 그 밖에 情報索引簿(閱覽簿)의 作成·公示, 제도발전을 위한 研究·건의·조언, 議會 등에서의 정기·부정기적인 報告 등 프라

이버시保護를 위한 方案을 강구하는 機能 등이 있다. 여기에 덧붙여, 별도의 監督機關을 두고 있지 않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政府內의 特定部署로 하여금 法運營上 필요한 基本的인 業務를 遂行하도록 하고 있다.⁹⁾

이러한 監督機關의 설치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의 立法過程에 있어서도 중요한 爭點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1) 옴부즈만식의 強力하고 獨立的인 機構를 설치하는 방안, 2) 기존의 國家機關을 活用하는 방안 및 3) 監督機關을 두지 않고 情報處理機關의 自律에 맡기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며, 기존의 國家機關을 活用하는 문제는 다시 監督機能을 1) 法院이나 國會에 부여하는 방안, 2) 大統領 또는 國務總理 직속의 行政的 委員會에 맡기는 방안, 3) 監査院 또는 政府內의 特定部署에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本 研究에서는 個人情報의 保護를 위한 整備된 기존의 法的制度가 없었고 行政電算化 등이 初期段階로서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監督機關을 두지 않고 情報處理機關의 自律에 맡기는 방식을 택하되, 個人情報의 處理에 관련된 사항을 主務官廳의 長을 경유하여 總括機關인 遞信部長官에게 登錄하게 하고 그 밖에 個人情報處理의 適正性을 維持하기 위하여 主務官廳의 長에게 일방적인 規制權限을 부여하였다. 다만 試案에서는 個人情報處理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고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諮問委員會를 설치하였는 바, 앞으로 個人情報保護制度의 발전여하에 따라서는 이 委員會를 格上시켜 監督機能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어쨌든, 個人情報處理의 規制는 個人的 프라이버시와 國家能率 또는 公共利益과의 충돌가능성이 매우 큰 문제로서, 그 規制方式의 選擇에 있어서는 人權保護側面에 주된 비중을 두되 國家現實의 與件 등을 세밀히 분석·고려하여 兩利益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9) 미국의 경우에는 行政管理豫算廳(OMB)으로 하여금 新規情報시스템에 대한 報告를 접수하게 하고 있으며, 일본은 總務廳長官에게 情報과일의 公示, 資料提出 및 說明要求權 등을 인정하고 있다.

[主要 立法例別 個人情報處理規制·調整關聯機關] 〈表 I〉 참조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은 다음 각호의 기관, 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개인(이하 “정보처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된다.

1. 국가의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은행
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금융·보험·신탁 및 이와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는 자와 정보처리 또는 정보역무제공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민간정보처리기관”이라 한다)

條文解說 및 關聯問題

[解 說] 이 법은 國家의 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 韓國銀行 등의 公的部門과 일정범위의 民間部門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民間部門(民間情報處理機關)은 經濟的信用 등 個人的인 秘密 또는 情報를 크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金融·保險·信託 등에 관련된 業務를 取扱하는 者와 情報處理 또는 情報役務提供을 營業으로 하는 者 중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第3號 이외의 民間企業 등에 의한 個人的 私生活 侵害可能性이 충분히 있음에도 이처럼 최소한의 民間部門만을 規制對象에 포함시킨 이유는 規制의 폭을 넓힐 경우에 企業의 經濟的 自由保障등을 근거로 한 反對가 쉽게 예상되며, 그에 따라 이 制度의 成立可能性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初期段階인 현재로서는 그 規制範圍의 縮少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장차 이 법이 정착된 이후에는 그 範圍가 擴大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論 議] 私生活保護法의 規制를 받는 情報處理主體의 범위에 公的部門만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民間部門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公的部門 또는 民間部門에 있어서도 그 포함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個人的 프라이버시權과 經濟的 自由의 충돌, 國家權力에 의한 民間活動의 統制·監視의 擴大 및

民間言論媒體의 統制로 인한 言論機能의 弱화 등 많은 복합적인 문제점을 내포한 것으로서, 保護法制定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요하는 사항 중의 하나이다.

〈否定論〉 民間部門의 포함을 反對하는 주장의 근거로는, 1) 他人의 權利와 利益을 침해하지 않는 한 民間部門의 활동은 자유로와야 하며, 國家에 의한 民間部門의 지나친 法的 規制는 國民監視體制를 強化하는 결과가 되어 不當하다. 2) 民間部門에서의 情報蒐集은 當事者의 자유로운 意思에 의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公的部門에 의한 情報處理에 비해 위험성이 낮다. 3) 民間部門이 個人情報를 保護하는 데에는 費用上의 난점이 있으며, 政策的으로도 컴퓨터산업 등의 當面重點産業의 萎縮을 초래할 수 있다. 4) 民間部門에 의한 個人의 프라이버시侵害는 私法的인 차원에서 救濟가 가능하다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肯定論〉 民間部門의 포함을 주장하는 견해는, 1) 企業의 社會的 責任이 특히 강조되는 現代社會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企業活動의 制限은 불가피하며, 國民監視體制強化의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 2) 현실적으로 私的團體에 의한 個人情報의 蒐集·利用이 반드시 本人의 同意 또는 자유로운 意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金融電算網의 統一에 의한 個人信用狀態에 관한 情報交換의 증대와 職場의 事務自動化를 통한 광범위한 職員統制 및 勞使問題에의 利用可能性 등을 보더라도 民間部門에 의한 個人 私生活侵害의 위험성도 높다. 3) 費用이 人間의 尊嚴性보다 우선할 수는 없으며, 國民의 基本權이 무시된 상태에서의 重點産業育成의 주장은 人間尊嚴性喪失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소치이다. 4) 情報處理技術의 專門化·高度化로 인하여 公的部門과 民間部門의 協力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民間部門을 除外시키는 것은 保護法 자체의 死文化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5) 人間의 尊嚴性에 직결되는 프라이버시侵害는 다른 本質的인 權利와 충돌하지 않는 한 事後的인 救濟보다는 事前豫防이 더 바람직하다는 등의 根據를 提示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立法例〕 情報處理者의 범위에 관한 각국의 立法態度는 크게 公的部門만을 인정

10) 宋相現, 『컴퓨터安全과 프라이버시保護에 관한 研究』, 서울: 한국과학재단, 1988. 11, pp.

하는 것과 私的部門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國家行政機關 등 公的部門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立法例로는 미국(제552조의2제1항1호, 제552조5항)과 일본(제2조1호)을 들 수 있으며,¹¹⁾ 公的部門외에 民間部門을 포함하는 立法例는 다시 情報處理의 규제정도에 있어서 1) 公的部門과 차이를 두지 않는 것(스웨덴, 영국)¹²⁾과 2) 차이를 두는 것(서독, 프랑스)으로 나눌 수 있다.¹³⁾

〔關聯問題〕 民間部門을 規制對象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國民의 알權利 충족에 큰 몫을 담당하는 言論企業에 대하여는 言論 본래의 順機能을 保障한다는 측면에서 規制를 緩和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言論關聯企業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立法例로는 서독(제1조3항)과 프랑스(제33조)가 있다.

제4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 (1)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개인정보처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처리업무에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단체의 장 및 정보처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다만, 일본과 미국의 立法例는 情報의 委託處理를 인정함으로써 私人 중 일정한 受託業者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聯邦 프라이버시法은 聯邦에만 적용되고 州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2) 영국의 데이터保護法은 「情報利用者」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公的·私的 部門을 구별하지 않으면서도, 情報서비스提供會社에 대해서는 個人데이터의 國外移轉禁止의 免除, 閱覽·複寫·訂正·抹消 등 個人의 自己情報에의 接近權否認 등 약간의 特別取扱을 하고 있다(제12조, 제3장).
- 13) 서독은 그 適用對象을 「行政廳 등 公共機關」, 「自己의 目的을 위하여 데이터를 處理하는 非公共機關」, 「第3者를 위한 營業上의 데이터를 處理하는 非公共機關」으로 나누어 規程程度에 차이를 두며, 州에 대해서도 州法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聯邦法上의 行政廳 등 公共機關에 관한 규정 중 聯邦關聯規定을 제외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國家·公共機關, 地域團體 또는 私法上의 公益法人」과 「그 이외의 法人」으로 분류하고, 前者에 있어서의 個人情報의 自動處理는 事前意見聽取 후에 委員會가 결정하고 後者에 대해서는 個人情報의 自動處理와 國外移轉을 委員會에 事前申告하도록 하는 등 규제내용에 차이를 두고 있다.

條文解説 및 關聯問題

[解 說] 個人情報處理에 관한 重要事項을 審議하고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소속하에 諮問委員會를 설치하고, 國務總理로 하여금 委員을 任命 또는 委屬하게 하였다. 그리고 委員會의 構成·運營 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그런데 試案이 外國立法例상의 臬부즈만과 같은 總括的인 指導·監督機能을 가진 機關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諮問委員會를 둔 것은 個人情報保護 義務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나친 規制로 인한 逆機能과 豫算上의 難點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장래에 이 制度가 본래도에 진입하면 主務官廳의 長과 遞信部長官에게 주어진 權限 등을 통합하고 보충하여 個人情報處理에 관한 業務를 이 委員會가 總括的으로 수행하는 문제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條文解説 및 關聯問題

[解 說] 이 條는 統計法, 信用調査業法, 金融實名去來에 관한 法律, 信用卡業法 등 다른 法律에 個人情報의 處理에 관한 事項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律에 의하도록 한 것으로서, 실제 立法時에는 情報의 蒐集·處理로부터 個人秘密을 保護한다는 측면에서 試案과 다른 個別法律들간에 좀더 면밀한 檢討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 2 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 1 절 개인정보처리의 등록 및 공시

제6조[개인정보처리의 신고]

- (1) 정보처리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주무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정보처리기관은 제1호 내지 제6호와 제9호의 사항만을 주무관청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당해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되는 사업 또는 문서의 명칭
 2. 정보처리기관의 명칭과 주소
 3. 당해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그 예상보유기간(수집개시의 일자를 포함한다)
 4. 수기식문서 또는 전자적자동처리문서의 구분
 5. 정보당사자의 범위 및 기록항목
 6. 주무관청의 명칭과 주소
 7. 당해 개인정보의 수집이 법률의 규정 또는 정보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것인지의 구분. 다만, 법률의 규정이 없거나 정보당사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8. 당해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처리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
 9. 당해 개인정보를 국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령자의 명칭·주소 및 그 취지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條文解説 및 關聯問題

[解 說] 情報處理機關은 各號의 사항을 主務官廳의 長에게 申告함으로써 個人情

의 請求를 거부할 수 있다(案제20조 제2항 제5호). 그러나 情報處理機關이 그 사실을 申告 및 登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情報當事者의 權利를 拒否할 수 없으며, 또한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제20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한 情報當事者의 權利의 일부만이 보장되는 때에는 그 밖의 權利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3) 정보처리기관은 개인정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어 그 정보를 개인정보열람부 또는 관보에 기재하여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는 것이 당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백히 하여 그 사항의 기재생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범죄의 예방에 관한 사무
2.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무
3.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條文解説 및 關聯問題

[解 說] 本項은 個人情報가 各號에서 정한 事務와 관련되어 그 정보에 관한 사항을 個人情報閱覽簿 또는 官報에 기재하여 一般의 閱覽에 제공함으로써 그 事務의 適正한 遂行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情報處理機關은 그것을 閱覽簿 또는 官報에 기재하지 않을 것을 遞信部長官에게 要請할 수 있으며, 遞信部長官은 당해 個人情報를 閱覽簿 또는 官報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案제9조 제1항 단서). 그러나 이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제1항 및 제8조에 의한 申告 및 登錄은 하여야 하며, 다만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申告하지 않아도 된다.

[主要 立法例別 公示免除事由] 〈表 IV〉 참조.

(4) 정보처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등록된 개인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거나 또는 개인정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

報를 處理할 수 있으나, 제9호의 規定에 정한 行爲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主務官廳의 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案제14조 제1항). 그리고 民間情報處理機關은 各號의 사항 중 제1호 내지 제6호와 제9호의 사항을 申告할 수 있다.

[立法例] 個人情報를 新規로 處理하거나 또는 變更하는 경우에 대한 規制方式은 크게 申告(報告, 登錄, 通知)制와 許可(同意)制로 나뉘는데,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현실여건과 입법기술적 차원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이에 관한 立法例¹⁴⁾는, 1) 事前通知(일본), 2) 事後通知·報告(미국), 3) 事前許可(스웨덴)¹⁵⁾, 4) 公共·民間部門 모두 事前登錄(영국), 5) 公共部門은 事前同意, 民間部門은 事前申告(프랑스)¹⁶⁾, 6) 民間部門에 한해 事後申告(서독) 등 매우 다양하다.

[主要 立法例別 通知·申告·登錄事項] 〈表 II〉 참조.

(2) 정보처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개인정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일반에 공표되었거나 공개된 사실인 경우
2.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당사자의 권리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경우

條文解説 및 關聯問題

[解 說] 個人情報가 이미 秘密로서의 의의를 상실하였거나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해서도 情報當事者의 接近權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情報當事者의 權利를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따라서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情報處理機關은 그 사실을 申告하여 登錄함으로써 情報當事者

14) 일본 제6조; 미국 제552조의2 제15항, 제16항; 스웨덴 제2조1항; 영국 제4조; 프랑스 제15조, 제16조; 서독 제39조 등 참조.

15) 스웨덴은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을 구분하지 않고 事前許可制를 취한다.

16) 公共部門에서의 個人情報處理는 事前에 國家情報處理自由委員會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同意制를 취하고 있다(제15조).

이 주무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條文解說 및 關聯問題

[解 說] 個人情報의 處理에 있어서 제1항에 의한 申告內容에 變更이 있는 경우에도 本條 제1항 내지 제3호에 準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예외]

정보처리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정보처리기관의 일상적 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과 외교상의 비밀에 관련된 경우
2. 범죄의 수사 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조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당해 정보처리기관 소속원의 인사, 급여 또는 복리후생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련된 경우
4. 개인정보가 수집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될 것인 경우
5. 당해 개인정보처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당사자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條文解說 및 關聯問題

[解 說] 個人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해서는 情報處理主體에 의한 個人情報의 處理를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侵害를 豫防할 必要性이 있으나, 그렇더라도 重大한 國家的 利益 등을 侵害할 危險性이 큰 경우 등과 같이 合理的인 理由가 있는 때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規制와 그 緩和의 문제는 그 保護法益의 엄격한 比較衡量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다. 個人情報의 處理가 各號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個人情報를 당해 情報處理機關의 日常的 利用 이외의 다른 目的으로 利用하지 않는다는 前提하에 申告를 하지 않아도 되며, 따라서

登錄簿에 登錄되지도 않는다(案제8조 제1항 및 제3항 참조).

[參考事項] 國家利益 등을 理由로 한 規制緩和事由는 國家에 따라 상대적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立法例마다 規制를 免除하는 방식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情報處理에 대한 規制條項의 適用免除를 인정하는 立法例는(스웨덴법과 프랑스법에는 情報處理規制緩和規定이 없음) 規定方式에 있어서 크게, 1)규제조항전반에 대하여 統一的으로 適用免除規定을 두는 立法例와(영국¹⁷⁾, 미국¹⁸⁾), 2)규제의 段階別·內容別로 免除事由를 구별하여 規定하는 것이 있으며, 後者에는 다시 3)情報과 設置의 登錄, 情報索引簿(閱覽簿)作成 및 閱覽提供, 情報과 官報를 통한 公示, 情報의 利用·提供의 제한 등 그 규제의 내용별로 각기 規制免除條項을 두는 立法例(일본)¹⁹⁾, 4)規制의 諸段階 중에서 情報시스템設置의 公示義務에 대해서만 規制免除條項을 두는 立法例가 있다(서독).²⁰⁾ 試案의 경우에는 3)의 입법태도를 따르고 있다.

[主要 立法例別 通知·申告·登錄 등의 規制緩和事由] <表 IV> 참조.

제8조[신고사항의 송부 및 등록]

- (1) 주무관청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체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주무관청의 장은 제14조 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한 때 또는 제1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체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 제4장 참조. 영국법은 情報處理規制節次條項과 接近權保障條項의 適用免除事由를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후자를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

18) 제552조의2 제10항 및 제11항 참조. 미국의 프라이버시법은 適用이 免除될 수 없는 條項들을 摘示한 다음, 그 외 條項에 대한 一般的인 適用免除事由를 규정하고 나아가 特定條項에 대한 適用免除事由를 추가하여 인정하고 있다.

19) 제6조2항, 제7조2항 및 3항, 제9조2항 등 참조.

20) 제12조2항 참조. 서독의 경우에는 公共機關의 시스템設置公告義務에 대한 免除事由만을 규정하고 있다.

- (3) 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條文解說 및 關聯問題

[解 說] 主務官廳의 長은 個人情報處理에 관한 사항을 登錄簿에 登錄할 수 있도록 제6조에 의하여 申告받은 사항 전체를 遞信部長官에게 신속하게 送付하여야 하며(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個人情報의 國外移轉 및 國外處理에 관련된 承認, 承認取消 또는 申告接受의 사실을 신속히 遞信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제2항). 그리고 個人情報處理登錄簿에의 登錄 및 그 管理責任은 遞信部長官이 진다(제3항, 案제17조 제1항 제2호). 申告에 있어서 主務官廳의 長을 경유토록 한 것은 主務官廳의 長에게 제16조 등에 의한 監督의 편의를 提供하고 아울러 行政的 指揮·監督體系를 維持하려는 목적에서이다. 그리고 主務官廳의 長으로 하여금 申告事項 등을 모두 遞信部長官에게 送付 또는 通報하게 한 것은 遞信部長官이 이 法의 運用 전반을 總括하는 機關이기 때문이다.

제9조[개인정보열람부의 작성 및 공시 등]

- (1) 체신부장관은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중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한 개인정보열람부(이하 “열람부”라 한다)를 매년 1회 이상 발간하여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사항이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부를 발간한 이후에 등록부에 등록된 개인정보처리사항을 수시로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3) 체신부장관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보당사자가 열람부 및 관보의 열람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條文解說 및 關聯問題

[解 說] 遞信部長官은 제20조에 의한 情報當事者의 권리 행사에 편의를 提供하기 위해 登錄簿에 登錄된 事項중에서 基本的인 事項(案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6호)과 請求를 행할 場所(案제21조 제1항)를 기재한 閱覽簿를 每年 1회 이상 發刊하여 一般의 閱覽에 供하여야 하며(제1항), 閱覽簿를 發刊한 이후에 발생한 사실은 수시로 官報를 통하여 公示하여야 한다. 그리고 遞信部長官은 總務處長官과 협의하여 情報當事者가 閱覽簿 및 官報를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閱覽할 수 있도록 必要한 諸般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제3항).

[立法例] 대부분의 立法例가 情報處理裝置의 公示를 위해 情報索引簿(閱覽簿) 또는 登錄簿를 작성·비치하여 閱覽하게 하거나(영국, 프랑스, 일본),²¹⁾ 官報 등을 통해 情報시스템의 設置 및 變動事項을 告示하게 하고 있으나(미국, 서독, 일본),²²⁾ 스웨덴의 경우에는 公示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

[參考事項] 自己情報의 統制權保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個人情報를 處理하는 시스템의 公示는 필수적이다. 문제는 公示의 內容을 어느 범위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公示內容의 範圍問題는 그 公示內容 자체가 프라이버시侵害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公示內容을 個人의 自己情報에의 接近權保障에 必要한 최소한의 것으로 限定할 필요가 있다.

[主要 立法例別 公示事項] 〈表 Ⅲ〉 참조.

제 2 절 개인정보의 처리와 그 제한

제10조[통칙]

- (1) 정보처리기관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條文解說 및 關聯問題

21) 영국 제9조; 프랑스 제22조; 일본 제7조 등 참조.

22) 미국 제552조의2 제5항4호; 서독 제12조; 일본 제8조 등 참조. 특히 미국법은 그러한 告示를 低廉한 費用으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編輯·刊行할 것을 行政機關에 의무지우고 있다.

[解 說] 情報處理機關은 申告하여 登錄한 경우에만 個人情報를 處理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정보처리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정보당사자로부터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條文解說 및 關聯問題

[解 說] 個人情報의 蒐集은 法律의 規定이나 本人의 同意를 얻어 가능한 한 情報當事者로부터 직접 하여야 하나, 法律의 規定이 없거나 情報當事者의 同意를 얻기가 어려운 合理的인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제7호의 規定에 의해 그 事由를 申告함으로써 蒐集할 수 있다.

[立法例] 나라에 따라 規定內容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立法例는 情報蒐集에 대하여 制限을 가하고 있다. 立法例上의 情報蒐集制限의 內容에는, 1) 蒐集方法에 있어서 直接的이고 適法한 蒐集(미국, 서독, 프랑스, 영국, 스웨덴),²³⁾ 2) 情報蒐集事實에 대한 情報當事者에의 通知(미국, 서독, 프랑스, 스웨덴),²⁴⁾ 3) 目的의 特定과 利用目的을 초과한 情報蒐集禁止(미국, 영국, 일본)²⁵⁾ 등이 있다.

[參考事項] 情報蒐集의 制限은 試案과 같이 法律의 規定 또는 本人의 同意에 의한 情報當事者로부터의 直接蒐集原則을 선언하는 외에도 蒐集對象範圍가 너무 광범한 경우 등과 같이 本人의 同意를 얻기 어려운 例外的인 경우에는 事前에 일정사항을 相當期間 동안 告知·公告하게 하거나 情報蒐集事實을 情報當事者에게 事後에 通報하는 등의 義務를 明示的으로 부과할 수도 있으나, 試案에서는 情報處理機

23) 미국 제552조의2 제5항2호; 서독 제3조; 프랑스 제25조; 영국 데이터保護原則; 스웨덴 제6조 등 참조.

24) 미국 제552조의2 제5항3호; 서독 제12조1항, 제26조1항 및 제34조1항; 프랑스 제27조; 스웨덴 제6조 등 참조. 다만, 스웨덴은 蒐集方法, 蒐集事實의 當事者에의 通知등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데이터檢査院의 指示事項으로 규정하여 情報蒐集을 間接的으로 規制하고 있다.

25) 미국 제552조의2 제5항1호; 서독 제9조1항, 제23조 및 제32조1항; 영국 데이터保護原則; 일본 제4조 등 참조.

關의 過度한 業務上의 負擔을 고려하여 명문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個人私生活保護努力의 進전에 따라서는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정보처리기관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당해 정보처리기관의 소관업무수행의 목적에 적합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기간 이상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條文解說 및 關聯問題

[解 說] 情報處理機關이 處理하는 個人情報는 당해 情報處理機關의 業務遂行目的에 적합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目的의 달성에 必要한 期間을 초과하여 保有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個人情報를 處理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範圍·目的·保有期間등을 명확히 하여 申告·登錄하여야 한다(案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立法例] 目的·保有期間違反 등 不法·不當한 情報利用 및 管理의 禁止를 특별히 明文으로 規定한 立法例로는 미국(제552조의2 제5항1호), 영국(데이터보호원칙), 프랑스(제28조), 일본(제4조), 스웨덴(제6조)²⁶⁾ 등이 있다.

(4) 정보처리기관은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함에 있어서 그 범위 및 내용이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재의 정확한 사실적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條文解說 및 關聯問題

[解 說] 情報處理機關에 의한 個人情報의 保有·利用은 登錄簿에 登錄된 內容과 일치하여야 함이 原則이며, 情報處理機關은 管理·保有하는 個人情報의 正確性, 完全性, 最新性, 目的適合性 등이 유지되도록 適正管理의 責任을 진다.

[立法例] 個人情報의 適正維持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는 立法例들은 個人情報를 正確性, 完全性, 適時性 및 合目的性에 맞게 유지할 것을 情報處理者에게 요구하

26) 데이터檢査院의 指示事項으로 하고 있다(제6조1항7호).

고 있다(미국, 스웨덴, 일본, 영국).²⁷⁾

- (5) 정보처리기관은 개인정보의 불법·부당한 유출, 멸실, 훼손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행정적·기술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條文解說 및 關聯問題

[解 說] 情報處理機關은 個人情報의 盜難, 不法流出, 毀損 등을 방지하고 個人情報의 合理的인 管理를 위하여 情報處理裝置 등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行政的·技術的인 諸般 安全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立法例] 미국, 일본, 프랑스의 立法例가 情報의 安全을 확보할 적절한 安全措置를 강구할 것을 情報處理者에게 요구하고 있다.²⁸⁾

제11조[기록의 제한]

개인의 정치적·철학적인 신념과 노동조합가입여부 및 그 활동사항은 본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어떠한 이유로도 전자적자동처리장치에 의하여 기록할 수 없다.

條文解說 및 關聯問題

[解 說] 政治的·哲學的인 信念, 勞動組合加入與否 및 活動事項등은 惡用의 경우에 個人의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을 침해할 위험성을 띠고 있으므로 情報當事者 本人의 書面에 의한 明白한 同意가 없는 한 컴퓨터를 利用하여 入力할 수 없다.

[立法例] 入力制限에 관한 立法例로는 프랑스(혈통, 정치적·철학적·종교적 사상, 勞組의 소속을 직접·간접으로 노출시키는 개인정보)와 스웨덴이 대표적인데, 특히 스웨덴은 일반적인 入力制限 事項으로서 政治的·宗教的 信條, 그리고 관청 이외의 法的 權限이 있는 者에 의한 入力の 制限事項으로서 犯罪容疑, 有罪判決, 前科事實 기타 刑事處分, 질병력, 건강상태, 社會扶助歷, 알콜중독자保護

27) 미국 제552조의2 제5항5호 및 6호; 스웨덴 제8조 및 제9조; 일본 제5조2항; 영국 제22조 등 참조. 다만, 영국법은 適正維持義務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데이터의 不正確으로 인한 損害賠償規定을 통해 個人情報의 適正維持를 도모하고 있다.

28) 미국 제552조의2 제5항10호; 일본 제5조1항; 프랑스 제29조; 서독 제6조1항 등 참조.

歷과 아동보호법·정신장애자보호법·외국인법·公安法 등에 의한 強制處分事實 등을 열거하면서 그 入力を 데이터檢査院의 許可事項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入力制限規定은 없으나 다른 개인데이터에 비해 특별히 취급할 個人데이터를 나열하고 있다(출신인종, 정치적·종교적 신념 및 기타의 信條,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성생활, 刑事有罪判決).²⁹⁾

[關聯問題] 保護法의 적용대상에서 手作業處理에 의한 個人情報를 제외하거나 부분적으로 포함하는 경우에 入力制限에 해당하는 個人情報가 법 적용이 제외되는 手作業情報處理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手作業文書를 除外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對策이 필요하다.

제12조[제공 등]

- (1) 정보처리기관은 법률의 규정 또는 정보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당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부에 등록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이전할 수 없다.

條文解說 및 關聯問題

[解 說] 本條는 情報處理機關 상호간의 情報交換·流通으로 인한 情報의 統合·集中 및 流用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機關外部者에 대한 情報의 不法的인 提供과 惡用의 가능성을 제거함이 그 目的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個人情報의 利用·提供·移轉 등의 행위는 登錄簿에 登錄된 目的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특별히 法律의 規定 또는 情報當事者의 同意가 있거나 또는 당해 機關의 業務遂行을 위하여 日常的으로 利用하는 경우에는 登錄簿에 登錄된 目的과 다른 目的으로 利用·提供·移轉할 수 있다. 그러나 個人情報의 國外移轉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主務官廳의 長의 承認을 얻거나 申告하여야 한다(案제14조 제1항 및 제2항).

[立法例] 대부분의 立法例는 不法的인 情報의 提供 및 利用을 制限하고 있는데(미

29) 프랑스 제31조; 스웨덴 제4조; 영국 제2조3항 등 참조.

국, 스웨덴, 서독, 프랑스, 영국, 일본 등),³⁰⁾ 특히 西獨은 行政廳 등 公共機關의 公共部門에의 提供條件과 그 외 部門에의 提供條件을 구분하여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立法例 중에는 情報의 提供·利用制限이 免除되는 경우를 특별히 明文化하고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법은,

- 1) 職務遂行上 당해 記錄을 필요로 하는 당해 行政機關 소속 公務員에게 提供하는 경우,
- 2) 情報自由法(FOIA)에서 정하는 경우,
- 3) 당해 記錄의 利用目的이 그 蒐集目的에 합치되는 正規的 利用의 경우,
- 4) 統計調査 또는 이와 관련된 事業의 企劃 또는 執行을 위하여 統計局(Bureau of the Census)에 提供하는 경우,
- 5) 당해 記錄을 統計調査 또는 報告資料에 한정하여 利用할 것이라는 所定の 誓約書를 事前에 제출한 受領者에게 당해 記錄을 個人的 識別이 不可能한 형태로 移轉하는 경우,
- 6) 聯邦政府가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확인한 記錄을 國立文書保存所에 提供하는 경우 또는 美合衆國文書保存官이 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開示하는 경우,
- 7) 다른 行政機關 또는 미국의 관할범위내의 政府管轄機關에 대해 民·刑法上의 強制執行活動을 위하여 開示하는 경우,
- 8) 個人的 健康 또는 安全에 영향을 미치는 급박한 상황을 표시하기 위하여 他人에게 提供하는 경우,
- 9) 聯邦議會 所管範圍內에서 議會의 委員會 등에 개시하는 경우,
- 10) 會計檢査院(General Accounting Office)의 職務遂行을 위해 開示하는 경우,
- 11) 管轄法院의 命令에 의하여 개시하는 경우, 그리고 끝으로

30) 미국 제552조의2 제2항; 스웨덴 제11조1항; 서독 제10조, 제11조, 제24조 및 제32조2항; 프랑스 제29조; 영국 제5조2항4호 및 제15조; 일본 제9조 및 제10조 등 참조.

12) 消費者報告機關에 提供하는 경우에는 情報當事者의 同意없이도 記錄을 提供 또는 開示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52조의2 제2항).

그리고 일본법은 法律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일保有目的 이외의 다른 目的을 위한 利用·提供을 制限하면서도,

- 1) 情報當事者의 同意가 있거나 情報當事者 本人에게 提供하는 때,
- 2) 法律上의 所管業務遂行에 필요한 한도에서 個人情報를 保有機關內部에서 利用하는 경우로서, 그 利用에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
- 3) 保有機關 이외의 行政機關, 地方公共團體 또는 法人(특수법인 포함)등에 個人情報를 提供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提供을 받는 者가 法定 事務·業務의 遂行에 필요한 한도에서 당해 個人정보를 사용하며, 그 사용에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
- 4) 기타 오로지 統計作成 또는 學術研究의 目的을 위하여 個人정보를 提供하는 때, 本人 이외의 者에게 情報를 提供하는 것이 明白히 本人의 利益이 되는 때, 기타 個人정보를 提供하는 데 대하여 特別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파일保有目的 이외의 目的을 위하여 個人정보를 利用·提供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9조 제2항).

이 외에 서독법은 自主目的의 非公共機關에 있어서의 情報提供은 當事者와의 契約關係 또는 公共利益의 실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나, 당해 機關(집단)의 構成員에 관한 名單이나 要約된 데이터의 提供은 그 提供으로 인하여 當事者의 保護價値 있는 利益이 侵害받지 않는다는 正當한 根據가 있는 경우에 성명, 직위·학위, 생년월일, 職業·職種, 주소, 전화번호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24조2항), 他主目的을 가진 非公共機關에 있어서의 個人정보의 提供은 그 受領人이 당해 情報를 知得할 正當한 利益을 가지고 있음을 疏明한 경우에만 허용됨이 원칙이나, 그 機關(집단)의 成員에 관한 名單別 데이터나 要約된 데이터의 提供은 이로 인하여 當事者의 보호가치 있는 利益이 侵害받지 않는 경우에 성명, 직위, 학력, 주소 및 當事者의 당해 집단내의 소속에 관한 明細등에 한하여 허

용되도록 하고 있다. (제32조3항).

(2) 정보처리기관은 법률의 규정이나 정보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등록부에 등록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당해 문서를 폐기한 때로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개인정보 개시의 일자, 목적 및 개시범위
2. 개시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개시를 행한 자의 성명

條文解説 및 關聯問題

[解 說] 情報處理機關이 행한 情報開示, 情報利用 등에 관한 정확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게 함으로써 不法의인 情報利用으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를擔保할 수 있다. 따라서 情報處理機關은 法律의 規定이나 本人의 同意를 얻어서 登錄된 目的과 다른 目的으로 個人情報를 利用·提供·移轉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根據記錄의 保存期間은 당해 文書를 廢棄한 날로부터 5년 이상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며, 그 근거기록에는 個人情報利用·開示의 目的·範圍 및 開示日字, 開示를 받은 者의 身上, 開示者의 姓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立法例] 미국법은 그 職務遂行上 당해 情報를 필요로 하는 당해 情報保有行政機關所屬 公務員에 대한 情報開示와 情報自由法(FOIA)에 의한 情報開示를 제외하고는 他人 또는 他行政機關에 대하여 행한 情報開示의 日字, 성격 및 目的, 開示를 받은 者 또는 機關의 주소 및 성명에 관한 기록을 維持하도록 하고 있다(제552조의 2 제3항 1호).

제13조[위탁처리]

정보처리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당해 정보처리기관의 소속직

원으로 보며 정보처리기관이 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정보처리기관이 그 선임·감독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條文解説 및 關聯問題

[解 說] 情報處理機關으로부터 個人情報의 處理를 委託받은 者는 당해 情報處理機關의 所屬職員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委託者에 의한 個人情報處理行爲는 모두 이 法의 規制對象이 되며 그의 행위에 대한 責任은 情報處理機關이 負擔한다.

[立法例] 이에 관하여 規定한 立法例로는 서독, 미국(제552조의2 제13항), 일본(제11조 및 제12조) 등이 있으며, 특히 서독은 委託處理를 허용하면서 受託者에게 法施行에 필요한 기술적, 조직상의 措置義務를 부여하고 있다(제6조1항).

제14조[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등]

- (1) 정보처리기관이 개인정보를 국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정보처리기관이 국외의 개인이나 단체 등에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거나 국외의 개인이나 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민간정보처리기관은 주무관청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3) 주무관청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외국에의 이전 및 국외처리가 개인의 비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국가이익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4) 체신부장관은 제3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의 취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條文解説 및 關聯問題

[解 說] 本條는 個人情報의 不法의인 國外移轉 또는 流出과 國內의 規制를 회피하기 위한 個人情報의 脫法的인 國外處理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個人情報를 國외의 다른 國家機關 등에 提供하고자 하는 경우에 情報處理機關은 제6조의 規定에

따라 主務官廳의 長에게 申告하여 事前承認을 얻어야 한다(제1항). 그리고 國外의 개인이나 단체 등에 個人情報의 處理를 委託하거나 國外의 개인이나 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個人情報를 處理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主務官廳의 長의 事前承認을 얻어야 하나, 民間情報處理機關은 主務官廳의 長에의 事前申告만으로 할 수 있다(제2항). 主務官廳의 長은 個人情報의 外國에의 移轉 및 國外處理가 個人의 秘密,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기타 重大한 國家利益을 侵害할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承認을 拒否하거나 承認을 取消할 수 있으며(제3항), 이러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 遞信部長官은 主務官廳의 長에게 承認의 取消 등을 勸告할 수 있다(제4항).

[立法例] 情報의 違法한 國外處理 및 移轉을 規制하는 立法例로는 스웨덴(데이터 檢査院의 許可), 프랑스(公益法人을 제외한 民間法人이 처리한 個人情報에 한해 委員會의 許可), 영국(登錄官의 移轉禁止通知權) 등이 있다.³¹⁾

제15조[개인의 권리보호 등]

- (1) 정보처리기관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당사자의 청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그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주무관청의 장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 (2) 정보처리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그 업무를 전담할 자를 둘 수 있다.

條文解說 및 關聯問題

[解 說] 제1항은 情報處理機關의 情報當事者의 請求에 대한 誠實對應義務와 그 請求의 接受 및 處理結果의 定期報告義務를 規定한 것으로서 個人의 自己情報에 대한 權利의 再確認과 上級機關(주무관청, 대통령·국회)에의 報告를 통한 直接·間接의 統制를 목적으로 한다(案제18조 참조). 그리고 제2항은 個人情報處理의 適正性維持를 위하여 情報處理機關의 長에게 指導·監督의 義務를 과하고 있다. 情報處理機關의 長은 指導·監督業務를 專擔할 者를 별도로 둘 수 있다.

31) 스웨덴 제11조2항; 프랑스 제24조; 영국 제5조2항5호 등 참조.

제3절 감독

제16조[주무관청의 장의 권한]

- (1) 주무관청의 장은 관할하에 있는 정보처리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가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유지되도록 지도·감독한다.
- (2) 주무관청의 장은 정보처리기관이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3) 주무관청의 장은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특정 개인정보에 대한 조사 또는 감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또는 감정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관련 개인정보의 제시를 해당 정보처리기관에 명할 수 있다.

條文解說 및 關聯問題

[解 說] 試案은 個人情報를 處理함에 있어서 情報處理機關의 自律性을 제고하려는 의도에서, 비록 이 법의 適正하고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主務官廳의 長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그것은 外部的·直接的인 規制를 위한 것이 아니라 一般的이고 內部的인 統制·調整을 目的으로 한 것이다. 이 법에 의한 個人情報의 處理는 우선 情報處理機關이 자체적으로 適正性을 維持하여야 하며, 다음으로는 情報處理機關에 대한 主務官廳의 監督權에 의하여 조정될 것이 기대된다. 따라서 主務官廳의 長은 관할하에 있는 情報處理機關에 대하여 일반적인 指導와 監督을 행하여 합리적인 個人情報處理를 유도하고 法律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是正 또는 中止를 命하여 통제하게 된다. 그 외에 主務官廳의 長은 法院으로부터 특별히 요구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個人情報에 대한 調査·鑑定을 행하고 관련 個人情報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關聯問題] 監督機關이 遂行하는 임무의 본질상, 그 機關의 構成員 및 기타 關係者에 의한 프라이버시 관련정보의 拾得과 그에 따른 侵害可能性을 쉽게 예상할 수